

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·변형 작업 개선계획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
제출인	기관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(사업장 소재지)	
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	명령일(명령기관):	
	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:	
	명령 내용([]작업중지 []개선조치):	
조치기한	(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일부터 10일 이내)	
조치방법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성명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.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